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조 철 기*

New Space of Citizenship : From National Citizenship To Cultural Citizenship

Cho, Chul-Ki*

요약 :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이동·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주요어 : 국민국가, 국가 시민성, 문화적 시민성, 일상적 시민성

Abstract : National citizenship has been empathized by nation-state since modern times. But with recent wave of globalization, the force of national citizenship is gradually reducing. Globalization requires citizens of global citizenship needed in the global village on the one hand, and of cultural citizenship suited in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trend shows that the geographical focus of citizenship is shifted or expanded from the political domain to the social and cultural domain. Moreover, with concerns of personal everyday life citizenship is extended from standard personality by Western view to inclusion and exclusion in micro everyday space, non-Western view based on social difference of gender, class, ethnicity etc. New spaces of citizenship, cultural citizenship and everyday citizenship which empathizes personal right and difference is emerging instead of national citizenship based on personal allegiance and duty of the state. This means that the state has not only a task of establishment of common national citizenship, but also a challenge to recognize of diversity of citizens.

Key Words : nation-state, national citizenship, cultural citizenship, everyday citizenship.

1. 머리말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코틀랜드 독립 뎀 영국 국기에서 무슨 색이 빠질까?”라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Union Jack)’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깃발이 합쳐진 것이다. 이 유니언 잭은 1603년 스코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 아일랜드 왕위를 물려받고 제임스 1세로 즉위한

뒤, 3개국 깃발을 통합해 탄생했다.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병합된 이후, 이 깃발은 국기(國旗)로 공인됐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집회나 캠페인에서는 푸른 바탕 위에 흰 십자가가 X자 형태로 그려진 옛 스코틀랜드 깃발을 사용한다. 물론 주민 투표에서 가까스로 분리 독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 사건은 헤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국가 내의 다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kcho@knu.ac.kr)

양한 민족과 종교 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도 많다. 지리는 인간의 거주 장소로서 공간의 패턴과 프로세스 그리고 원리뿐만 아니라 공간 내에서 그리고 공간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관계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또는 시민성의 형성과 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Desforges *et al.*, 2005; Staeheli, 2011).

앞에서 언급한 스코틀랜드 사례는 견고할 것만 같았던 국가 정체성의 흔들림을 보여준다. 시민성 또는 정체성은 고정된 불변적 개념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한다(Mullard, 2004). 근대 이후 시민성은 주로 시민과 국가 간의 관계로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연결성은 점점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따라서 이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역시 점점 침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시민성은 특정한 경계 또는 공간적 컨테이너 내에 국한되기보다 오히려 다중스케일적이고 중층적인 경향을 띤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시민성을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인식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국가 정체성과 경합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공간 스케일에 대한 지리적 관심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책임)뿐만 아니라 기회와 역압의 불균등한 분포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이는 개인이 시민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며,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에 관해 의문시하도록 하도록 한다.

시민성과 관련이 있는 지리학의 전공분야는 정치지리, 사회지리, 문화지리, 환경지리 등이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이 정치지리의 관심 영역이었다면, 최근으로 오면서 사회문화지리, 환경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시민성의 공간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 후, 최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전개 되는 새롭게 출현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을 탐색한 후 시민성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시민성의 공간과 그 유형

1) 시민과 시민성

시민성의 개념을 불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민성의 개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성에 대한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은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1778))다.

홉스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신의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루소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는데, 사회계약에 의해 사람들은 군주 또는 동등한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그 대가로 통치받는 것에 동의하였다(Faulks, 2000). 여기에는 명백하게 교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시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범죄의 성질에 따라 벌칙이 부가되는데, 자신의 시민권(citizenship rights)이 축소되게 된다. 예를 들면, 범죄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의 자유는 제한되며 그는 더 이상 이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많은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인 보편적 시민권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나타나 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은 UN의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쉽게 위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주어지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장기적인 저항 이후에 인정되었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최근에 인도네시아와의 유혈 및 오랜 전쟁 이후에 자신의 국가의 독립을 성취하였다.

2) 시민성의 공간: 포섭과 배제의 지리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자동적으로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한 사회 내에서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포섭'된 것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된 것으로 간주된다(Storey, 2003). 따라서 한 개인이 완전한 시민성(full citizenship)으로부터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배제는 공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공식적인 배제(formal exclusion)의 사례로는 투표, 일자리, 주거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많은 국가에서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었다. 일찍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영국에서조차 여성의 투표권은 1928년에야 획득되었으며, 스위스 여성들은 1971년까지도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다.

비록 예외가 더러 있긴 하지만, 대개 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국가의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보통 초국적 이주자들은 완전한 시민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초국적 이주자가 이주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면, 그 국가의 시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고, 그 국가의 시민과 결혼하거나,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문화적 준거를 따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사항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시민성을 이러한 공식적인 배제로만 한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비공식적 배제(informal exclus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명목상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국가에서도 비공식적 배제는 허다하게 일어난다. 비공식적 배제는 법적으로 완전한 시민을 사회적 약자(second-class citizens) 또는 소수자(minority)로 취급받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동성애자(케이나 레즈비언), 장애자,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은 종종 규범과 다르게 취급받기도 한다. 그들은 우

리가 소위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더 미묘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에 대한 자각은 단지 최근의 일이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의 위치성은 집이나 부엌에 있다고 믿고 있다. 달리 말하면, 여성의 위치성은 그들의 젠더와 관련하여 규정된다. 비록 최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관계와 젠더 불평등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여성들이 어떤 장소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지를 조명해오고 있다(McDowell and Sharp, 1997).

비공식적 배제는 비단 젠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민족성, 장애, 성(sexuality)과 관련하여 야기된다(Jackson, 2002). 비록 많은 국가들이 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법률은 인종차별주의, 장애인 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혐오증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와 같이 느끼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들은 사회에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다.

시민성에 대한 탐색은 누구 어떤 장소에 소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누가 그곳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사고를 포함한다. 시민성에 대한 탐색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불평등을 고려하게 한다. 즉 상이한 국가들 간에, 동일한 국가 내에서, 심지어 동일한 지역 내에서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를 탐색하게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지리적이다. 따라서 시민성은 개인과 그의 보다 넓은 세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3) 시민성의 유형

시민성의 개념이 이론의 여지가 있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듯, 시민성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역시 학자마다 다르다. 이제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유형의 시민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시민성의 의미를 구체화하려

면 범주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Janoski and Gran(2002)은 시민성을 자유주의적 시민성(liberal citizenship), 공화주의적 시민성(republican citizenship), 탈국가적 시민성(post-national citizenship), 포스트모던 시민성(post-modern citizenship)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유사하게 Dobson(2003)은 4가지 차원(권리/책임(의무), 공적/사적, 덕목/비덕목, 영역적/비영역적)에 초점을 두어, 시민성을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화주의적 시민성, 탈세계시민주의 시민성으로 구분한다(표 1). 이 두 학자의 시민성 유형 분류는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Janoski and Gran(2002)의 시민성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자유로운 집회와 저항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은 어떤 억압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로컬, 국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정치에 능동적이고 교양있는 참여를 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개별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공간적으로 국민국가의 시민, 정치 기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복지 사무소, 국공립 학교와 병원은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나타나고, 형성되며, 경쟁하는 장소의 일부이다. 이러한 장소 중의 하나를 폐쇄하려는 결정은 권리를 떠올려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개인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시민의 법적 권리와 실제적인 권리에 관심을 기울인다(Lewis, 2004).

둘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권리보다 의무(또는 책임성)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

성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관계가 깊다. 로컬적 참여를 강조하는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과 시민적 의무가 개인적 권리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국민국가라는 스케일의 아래 장소들, 특히 로컬 공동체라는 장소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식적인 자발적 조직, 시민 센터 또는 로컬 공동체가 대표적이다.

셋째, 탈국가적 시민성은 국가가 시민을 위한 유일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국가적 시민성은 공식적 권리가 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다른 국가나 초국가에 의해 어떻게 수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초국적 및 이중적 시민성(transnational and dual citizenship), 디아스포라 및 세계시민주의 시민성(diasporic and cosmopolitan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은 시민성의 형성에 있어서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탈국가적 시민성은 국가 아래의 스케일이 시민성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국가 위아래 스케일로 탈국가적 시민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스케일은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장소들 간의 상호연결을 추적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시민성은 국가 정체성보다 오히려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포스트모던 시민성은 원주민 또는 소수민족, 젠더, 성, 종교, 연령 및 장애에 관심을 기울인다. 공간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수여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로컬 공간이 어떻게 저항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 국가의 소속감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한 주장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최근 지리학은 정

표 1. 시민성의 유형

자유주의적 시민성 (Liberal citizenship)	공화주의적 시민성 (civic republican citizenship)	탈 세계시민주의 시민성 (post-cosmopolitan citizenship)
권리(계약상의) 공적 영역 덕목 없음 영역적(차별적인)	의무/책임(계약상의) 공적 영역 '남성' 덕목 영역적(차별적인)	의무/책임(비계약상의)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 '여성' 덕목 비영역적(비차별적인)

(Dobson, 2003)

표 2.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비교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법적 계약으로서의 시민성 • 설정된 국가 경계에 근거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 • 정치적 권리와 정체성이라는 공식적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문화적 구성으로서의 시민성 • 유동적이고 초국적인 정체성 • 글로벌 장소감에 근거한 보다 넓은 지리적 상상력

(Jackson, 2010, 139)

체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관계적/다중스케일적 본질(relational and multiscalar nature)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관점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국가라는 공간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는 그리고 국가의 경계 아래의 공간으로 부터도 온다는 것을 인식한다. 공간들 간의 아이디어, 정보, 사람의 흐름이 어떻게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Cross Stephens and Squire, 2012b).

이 연구는 국가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의 긴장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로컬 시민성과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탈국가적 시민성과 포스트포던 시민성은 문화적 시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ller(2002, 242)에 의하면, 시민성은 자연 또는 혈연에 근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이를 양산한다. 더욱이 Jackson(2010, 139)은 시민성이 엄격한 법적, 정치적 양상보다 감정적 또는 정의적 차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한다(표 2)¹⁾. 많은 이주자들은 이주한 새로운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국민국가 간의 초국적인 사회적, 경제적 연계를 유지한다(Ho, 2008).

3. 국가/민족 정체성 담보를 위한 시민성의 공간과 그 한계

1)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정체성

시민성이 보통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로서 간주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state)’²⁾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세계지도를 보고 개별 국가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정치적, 영역적 실체를 가진 국가이며,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 조직의 기본단위로 간주된다. 국가는 지구상에 규정된 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정 수의 인구를 거느리며 주권을 가진 정치적 단위로 조직된 영역이다. 국가는 영역(territory), 사람(people), 경계(boundaries), 주권(sovereignty)이라는 4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는 공간적 독립체이다.

국가의 개념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이 주권 국가의 원칙으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확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라는 시스템은 19세기까지 유럽을 넘어 확장되지 않았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국가의 등장은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 팽창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 전에는 다양한 더국지적인 정치적 시스템이 지배했다.

국가는 고정적이지 않다. 즉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국가는 영원히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국가들은 재창출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구소련(Soviet Union)은 15개의 다른 국가들로 해체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다. 유고슬라비아 또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코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동시대에,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1) 영역과 영토 그리고 사람

영역이란 특정 개인, 집단 혹은 기관에 의해 점유된 지리적 공간이 가지적이거나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와 울타리를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를 차별화하고, 배제와 포섭의 권력적 통제를 표출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 일컫는 말이다. 즉 영역의 형성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경계 만들기, 그 경계를 중심으로 안팎을 구분하기, 누구를 내부로 포섭하고 다른 누구를 외부로 배제하는 통제행위이다. 따라서 영역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사건, 그리고 관계를 영역 안으로 포섭할 것인지, 어떤 것은 영역 밖으로 배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영역의 공간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영역을 구성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박배균, 2013, 33).

국가는 정치적 독립체(political entity)인 동시에, 권력을 실행하는 영역(영토, 영공, 영해)을 구성하는 공간적 독립체(spatial entity)이다(Storey, 2011). 국가의 권력은 한정된 공간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간 또는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행사된다. 즉 국가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물론,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국가라는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영역적 단위로서 국가와 함께 발달했다.

(2) 국경과 경계

국가가 지정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면, 그들의 영역을 이웃 국가의 영역과 분리하는 국경(borders)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자연적 경계(natural boundaries)’ 또는 ‘인위적 경계(artificial boundaries)’로 구분했다. 자연적 경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천과 산맥을 들 수 있고, 인위적 경계의 사례로는 위선과 경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경계와 인위적 경계의 분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결정이다. 심지어 그것이 자연적 특징일지라도 구분선에 관한 어떤 자연적인 것은 없다.

국경은 국가 간의 경계선으로서 명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국경은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국경을 둘러싸고 적대감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국경이 단지 영역을 구분하는 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은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국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국경을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Storey, 2011). 예를 들면, 미국-멕시코 국경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인’ 멕시코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인지되지만, 멕시코인들에게는 선진국인 미국으로의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입힐 수도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국경은 ‘철의 장벽(iron curtain)’이다. 이는 공산주의 동부유럽과 자본주의 서부유럽 간의 인위적인 경계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나라로 분리되었다. 그 벽은 이동에 대한 물리적 경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동독과 서독 간의 가족을 분리하고, 유럽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경은 이전에는 통합되었던 국가를 분리하기도 하며 다른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

(3) 주권

국가는 주권(sovereignty)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타국의 간섭 없이 내정을 통치하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즉 주권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토를 관리하는 한 국가의 역량이다. 주권은 국가의 경계 내의 영역과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권위로 간주된다. 즉 외부의 간섭 없이 통치할 수 있는 국가의 원리이다. 그러한 간섭(침략 등)은 국제법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반의 사례로는 1980년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3년 미국의 그라나다 침공, 나토의 1999년에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침공, 199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들 수 있다.

2)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 정체성

앞에서 살펴본 국가(state)와 지금 살펴볼 민족(nation)³⁾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대개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남호엽, 2001). 국가 정체성이 영역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민족 정체성은 영역적 성격을 지니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족 정체성은 주어진 것으로 부모나 민족과 같이 물려받은 것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은 그들의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국가가 명확한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제도로서 정의된다면, 민족(또는 국민)은 명확한 영역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국적(nationality)을 가진 사람이 한 국가 이상을 점유할 수 있다(Storey, 2003). 민족은 공통적인 혈통,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민족 공동체(national community)에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 민족 집단에 의해 점유되고 통치되는 영역인 국민국가(nation-state)는 결코 없다. 대개 국가들은 많은 민족 집단에 의해 점유된다. 이들 중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그러한 국가에 소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그들의 '모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한편, 한 국가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그 국가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인, 방글라데시인, 자메이카인, 중국인과 같은 무수한 다른 민족 공동체가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간주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은 정신적 구성체이다. Anderson(1991)에 의하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보통 특정 영역과 연결되는 정체성과 관련된다. 민족 정체성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 접합체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시민성은 민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시민들은 보호, 안전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민족과 국가를 함께 묶는 것을 도와준다. 다른 민족과 국가에 대항하여 국가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이다. Miller(1997, 9)에 의하면, "민족(nation)은 정치적으로 자기결정을 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소유하려고 하는 정치적 제도로 간주된다."

민족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조한다.

Penrose(1993)는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족은 그것에 '소속(belong)'하는 특정 인간 집단으로 구성된다. 둘째, 이들은 특정 영역 또는 장소를 점유한다. 셋째, 어떤 수준에서 인간과 장소를 결합시켜주는 결속이 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울림을 가진다. 예를 들면, 민족 정체성은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에서 매우 명료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이벤트에서 국가(國歌)를 부르고, 국기를 휘날리며 자신의 민족 팀을 지지한다. 민족적 결속은 그러한 경우에 매우 강하며, 그들은 매우 감성적이게 된다.

문제는 민족 정체성이 민족주의(nationalism)로 출현할 때이다. 민족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퇴보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해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국가에 소속되고 누가 소속되지 않는지,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할 때,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월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되고 강화된다. 학교지리는 민족의 경계를 반복해서 되새기게 함으로써 민족의 구성에 큰 역할을 한다. 작은 스케일의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국민국가에 의해 수집되고 표현되는 데이터의 사용, 국가에 따라 세계를 구분하는 지도의 재생산,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내용 등은 모두 민족에 대한 사고를 당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3) 국가 시민성의 특징과 한계

시민성은 전통적으로 개인, 집단, 국가와 같은 공간적 단위를 가진 정치적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Smith, 2000). 즉 시민성은 정치적 공동체(보통 국가)에서 개별 구성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로서(Smith, 2000, 83; Mitchell, 2009, 84; Chouinard, 2009, 107), 특정 의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와 특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민성이 지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대한 계속적이고 불안정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성에 대한 정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성은 항상 공간과 장소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주권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행동하지만, 이러한 주권은 항상 장소를 통해 규정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와 연결된다(Lepofsky and Fraser, 2003, 130).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성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Yarwood, 2014, 10).

지리적 경계는 시민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준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경계화된 특정 영역의 구성원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시민성에 대한 개념화는 고대 스파르타나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라는 영역에 기반한다⁴⁾. 오늘날, 국민국가는 시민성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기초 단위다(Turner, 1997). 한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의 영토에 기반하여 정치적, 법적 구조와 체도를 통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Janoski and Gran, 2002, 13). 시민성은 국민국가라는 유럽적인 개념과 관계되며(McEwan, 2005)⁵⁾, 여전히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시민성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시민성은 인간의 집합적인 정치적 정체성이며 사회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참여를 조직화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Marshall(1950[1992])은 시민성이 경계화된 영역 내에서 개념화되는 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에 의하면 시민은 일련의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를 공유하고 있으며(Marshall, 1992), 이들 권리는 거버넌스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유지된다. 여기서 시민적 권리란 사람에 대한 자유,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사고와 신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정당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등 개인적 자유를 위한 필요성과 관련된 권리와 상응한다(Marshall, 1950[1992], 8). 법정과 사법 시스템은 시민적 권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투표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는 그 사회에서 우세한 표준에 따라 기본적인 삶의 표준, 예를 들면 적절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다(Marshall, 1950[1992], 8).

Marshall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적 권리는 주로 18세기에(예를 들면, 정의와 고용 권리의 설립), 정치적 권리는 19세기에(투표할 권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본질보다 개인적 지위로의 점진적인 대체), 그리고 사회적 권리는 20세기에 성취되었다(예를 들면, 교육, 건강, 복지 서비스)고 주장한다.

Marshall(1950[1992])은 이러한 변화에서 공간적 함의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권리와 관련된 기능과 제도가 분리되면서, 그것들은 지리적으로 응집되게 되었다. 국가적인 권리가 발달하면서 시민성의 지리적 초점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즉 시민성은 로컬에서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특정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와 관료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적 권리의 발달과 함께 시민성은 국민국가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게 된 것이다⁶⁾. 이와 같이 시민성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현대의 표준적인 시민성은 국민국가가 점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확장한 것이다(Urry, 2000). 그리고 이러한 국가 시민성은 투표, 사회보장, 병역의 무와 같은 실천을 통해 재생산된다.

영역은 공간을 규정하고 공간으로부터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스케일로 작동된다(Staeli, 2008; Elden, 2010; Storey, 2011). 경계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 국가 내의 시민은 경계를 통해 불법적인 이주자로부터 보호된다. 경계를 통한 국가 시민성은 국가에 의해 부여되고 통제된 단일의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Desforges *et al.*, 2005, 442). 시민성의 영역적 개념화는 타자에 대한 배타적 관점을 계속해서 재생산한다.

시민성은 '경계적인 개념(bounded concept)'이다. 시민성은 경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며, 시민성은 사람들을 서로 묶고 국가를 함께 묶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로서 역할을 한다(Yarwood, 2014, 18). 그러므로 시민성과 영역 간의 관계는 중요하고 상호호혜적이다. 시민성이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통 법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지위와 권리는 자신의 여권에 기록되어 있다⁷⁾.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지위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달려있다. 시민의 권리는 한 국가의 객관적인 법적, 정치적 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된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이에 반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소 주관적인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관련된다. 비록 시민에게 기대되는 의무의 일부는 병역의 의무와 같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대개 사회와 관계할 개인적 또는 윤리적 선택을 반영한다.

국가 시민성은 상상의 산물이다. 국가가 상상의 공동체인 이유는, 국가는 작은 동네나 마을처럼 모든 시민끼리 서로 알고 지내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통합과 동포애(애국심)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⁸⁾. 국가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그렇다고 국가 자체가 속임수이거나 거짓은 아니다. 국가의 질서/경계는 실질적으로 수호되고 유지되며 국가적 관념과 이상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Anderson, 2009).

시민성이 로컬적 단위에서 국가적 단위로 재스케일화(re-scale)된 것은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다. 국가 시민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종종 학살, 엄격한 통제, 동반자 관계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일상적 삶 속에서 그들이 확대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질서/경계 짓기 메커니즘을 고안해낸다. 가령 우표나 화폐에 군주나 국가 수장의 형상을 새겨 넣는 것도 그런 예라 하겠다. 소속감은 국기⁹⁾나 국가(國歌), 국가 기념일(예, 현충일, 제헌절 등), 문화 축제(예, 노팅힐 카니발) 등과 같은 고안된 의례, 스포츠(예, 국가대표 제도) 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립되기도 한다. 이처럼 애국심은 이러한 상징이나 의식을 통해서 권장되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애국심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부과되기도 한다. 예컨대, 타이의 경우 하루에 두 번,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국기와 국가에 대하여 경례를 해야만 한다. 2007년에는 국가가 울리는 동안 자동차 운전도 멈춰야

한다는 ‘애국(Patriotism)’법이 제정되었다(Anderson, 2009).

이처럼 타이의 사례는 국가 시민성이 어떻게 시민의 일상적 삶 속으로 투사되는지 명료하게 보여준다. 국가와 경찰력을 동원한 지배 권력은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이러한 질서/경계짓기를 통해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경배하게 하고, 집단적 소속감(동포애)을 만들어간다. 국가 스케일에서 장소감은 가장 뜨거운 장소감이지만, 시민 개개인이 애국심의 질서/경계 짓기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는 달라진다(Anderson, 2009).

국가 시민성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사시나, 운동 경기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자부심과 충성심, 소속감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로컬과 국가적 감정이 유착되어 하나의 ‘중첩적(nested)’ 장소감(시민성)이 형성된다. 바로 여기서, 한 국가를 위해 결합되는 동시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게는 적대적인, 합착된 스케일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대립되는 두 국가 사이의 질서/경계가 명료해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실제로 자신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Anderson, 2009).

로컬 시민성과 국가 시민성은 종종 충돌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을 두고 로컬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시민성이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로컬 시민성은 넘비즘(NYMBYism)으로 규정되어 외부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국가의 발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자기방어적인 넘비즘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로컬에 대한 애착보다는 국가의 목적 추구를 우위에 놓아야 하는 것일까? 밀양 송전탑 설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민성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지만(Painter and Philo, 1995), 오늘날 대개 국민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국가는 시민성에 관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구를 제공한다(Isin and Turner, 2007; Isin, 2012). 그러나, 세계화 등으로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력이 계속해서 침해받

고 있는 것처럼, 국민국가가 시민성의 실제적인 기초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assen, 2002). 경계화된 시민성은 경제적/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Closs Stephens and Squire, 2012a). 즉 시민성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중첩되어 다중적 시민성의 공간이 출현하고 있다(Desforges *et al.*, 2005; Staeheli, 2011; Closs Stephens and Squire, 2012b).

4.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일상적 공간의 부상

1) 초국적 이주와 문화적 정체성: 다문화 시민성

국가 시민성에 대한 강조는 주로 시민성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¹⁰⁾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Banks, 2008).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의 초래로 인하여 시민성의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다.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를 횡단하는 이동하는 노동자, 결혼을 위한 여성, 난민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민국가 내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민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의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다름’에 대한 도전과 면대면의 기회가 확대되게 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낯설음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과 이주민의 이동, 빈번한 국제적 차원의 거주지 이동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제 누구에게도 문화적 행동양식은 한 가지 문화권의 경험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중층적인 문화경험과 선택, 다양한 문화집단이 한 공간에서 공존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른 설명과 이해는 필수적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의 덕목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

식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가치 부여, 서로 다름에 대한 관용, 다원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화적 행동양식과 제도에 대한 고려 등이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는 밖으로 글로벌 시민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다문화 시민성을 요구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국가를 횡단한다. 시민성은 더 이상 지연 또는 혈연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성을 양산한다(Miller, 2002, 242). Jackson(2010, 13)은 시민성이 엄격한 법적, 정치적 양상보다 감성적 차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를 국가 정체성이라면, 후자는 문화적 정체성이라 지칭한다.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민들은 이중 시민성(dual citizenship)을 경험한다(Sassen, 2002). Escobar(2006)은 이러한 디아스포라 시민성을 ‘법역 외 시민성’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 국적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역 외 시민성은 세계화로부터 야기하는 다중시민성으로 연결된다¹¹⁾.

다문화 사회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헌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이상, 목표를 공유하는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Banks, 1997). 정의와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되어야만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 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Kymlicka(1995)와 Rosaldo(1997)는 민주사회에서는 민족집단과 이민자 집단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Kymlicka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으로, Rosaldo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 인종, 언어,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국가에서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집단을 구조적으로 포용하여 그들이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해당 집단이 고유의 문

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통일성 간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국가의 핵심목표인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Banks *et al.*, 2001). 정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때만이, 국가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Gutmann, 2004).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21세기의 시민성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적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국가 수준에서 공유되는 문화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애정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일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된다.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주의와 균열을 야기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공존해야 한다.

2) 개인의 일상적 공간과 문화적 정체성 : 일상적 시민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민성에 대한 개념화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서구중심적이다. 결과적으로 비서구적인 관점과 개인의 경험적인(예를 들면, 젠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McEwan, 2005, 971). 그러나 최근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인간이 일상적인 삶과 실천에서 시민성을 다르게 협상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시민성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민주적 과정, 능동적 시민성¹²⁾, 로컬적 저항, 활동주의(activism) 등의 정치적 시민적 행동 없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Pykett, 2010, 132).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시민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엄격한 법적·정치적 양상보다 오히려 시민성에 대한 감성적·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Jackson, 2010, 139).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시민성이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부 사람들은 정

치적 저항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시민성을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시민성은 일상생활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 Painter and Philo (1995)는 우리 인간이 시민성에 대한 일상 공간, 장소,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웃, 공동체, 공적 장소, 상이한 제도들이 시민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탐구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성 연구는 시청에서 계도까지, 공적 공원에서 사적 집까지, 도시에서 에지 공동체까지 시민들이 발견되는 곳과 변화하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왔다.

시민성이 일상생활에서 실행되고 이해되는 방법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학교는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팀 스포츠와 같은 과외 활동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해 시민성을 육성하는 하나의 장소이다(Pykett, 2009, 2011). 또한 학교는 다양한 가치(개인적, 종교적 등), 사람,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이다(Stacheli, 2011).

최근 지리학에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적 공간은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을 주어 배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을 배제한다(Stacheli, 2010). 즉 공적 공간은 남성과 성인을 포섭하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많은 국가들이 입법 행위를 통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일부 공적 공간은 연령, 민족, 인종, 젠더, 장애 등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배제한다(Painter and Philo, 1995). 한편,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자연, 동물,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 역시 인간에 의한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¹³⁾. 이와 같이 국가 아래의 일상적 공간(공적 공간, 사적 공간)에서는 일부 집단들이 시민성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지리학은 문화적 실천이 일상적 기초에서 시민성의 경험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Stevenson, 2001, Turner, 2001; Miller, 2002; Pykett, 2010). 일상적 시민성의 지리는 시민성이 상이한 장소, 제도, 정책, 경관, 몸 등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를 탐구함으로써 표출될 수 있다¹⁴⁾. 시민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법은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실천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는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5. 요약 및 결론

현대의 시민성 개념은 경계화된 영역으로서 국민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새로운 공간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등으로 국민국가의 권력 및 제도적 틀이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항상 국민국가의 영역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국가가 권력 이양(devolution), 로컬리즘(localism), 민영화(privatization), 초국주의(transnationalism)을 통해 공동화됨으로써 정치적 권력이 차츰 침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공적, 사적, 자발적 부문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병행하면서 점점 중첩된 복잡한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을 특정 국가와의 연결하는 대신 종교적, 사회적, 성적, 인종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Jackson, 2010). 국민국가의 경계보다 더 복잡한 공간,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출현하고 있다(Painter, 2002).

그리하여 이제 시민성은 공간적 관점에서 다중적 차원을 가진다. 단지 시민성의 일부만이 국민국가와 불가분하게 연결될 뿐이다. 이제 국민국가는 시민들을 묶는 여러 제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시민성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다양한 개인들, 즉 종교적, 성적 소수자, 민족적 디아스포라와 같은 비영역적 사회집단을 반영하는 다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즉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는 무언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인간과 장소들과의 연결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성은 고정된 경계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이며,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다차원적이다.

그렇다고 시민성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민국가는 법적인 시민성의 토대가 되며, 시민성의 형성과 조절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공간적 관점에서 시민성을 경계화된 고착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결된 네트워크로서 그리고 열린 장소감으로 시민성을 관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 1) 이경한(2007, 213)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 혹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으로 애국심, 국가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국가 정체성을 크게 3가지 하위 요소, 정치 정체성, 영토 정체성, 문화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정치 정체성은 국가의 상징이나 엠블럼 등에 관한 태도를, 영토 정체성은 영토와 관련된 태도를, 그리고 문화 정체성은 고유문화나 삶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영토 정체성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문화 정체성은 이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다. 왜냐하면 최근 지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정체성이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으로, 유동적이고 초국적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 정치지리학에서 국가는 state(국가)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국가라고 하면 country(나라)를 사용하는데 이는 토지 개념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내 50개의 지방정부, 즉 주를 state라고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state'는 국가(state)가 아니다.
- 3) 흔히 nation을 국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민족 또는 국민을 의미한다.
- 4)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의 영역화는 도시국가(city-state)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 이동하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성은 도시국가라는 영역에 한정되었다(Painter and Philo, 1995). 시민성은 특정 도시국가에 한정되었으며, 다른 도시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아테네 시민은 스파르타 시민이 될 수 없고, 그곳에서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지 않았다. 도시국가들은 상이한 유형의 시민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테네는 민주주의, 스파르타는 국방, (공화정)로마는 법을 강조했다. 쟁터와 계층은 시민성의 주요 결정인자였다. 따라서 시민성은 배타적이었다. 아테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테네 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남성이어야 하고, 전사, 원로, 노예 소유주이어야 했다(Bellamy, 2008). 이주자들은 시민성을 획득할 수 없었지만, 세금과 병역 의무에서는 자유로웠다. 로마제국의 성장(BC 27 이후)은 그리스의 시민성 모

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복당한 영토의 사람들은 로마제국에 대한 서비스, 예를 들면 군대에서의 보조 병사로 복무함으로써 ‘제2급(second class)’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을 횡단하여 법적 권리가 확장되었으며, 로컬적 장소 또는 영역에 부착되지 않았다. 정치적 권리보다 법적 권리에 대한 강조와 함께, 로마제국은 공적이고 의무에 초점을 둔 그리스 모형보다 더 수동적인 시민성을 장려하였다. 그리스와 로마제국 모두 사회적 시민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서구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시민성의 개념은 유럽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시민 대신에 봉건적이고 종교적인 질서에 종속되었다. 권리보다는 오히려 자선으로 로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구호금 또는 복지 제공을 위해 사용되었다(Marshall, 1950(1992); Cresswell, 2009). 로컬리티와 공동체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서구의 시민성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하였다. 많은 정치가들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시민성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발달시키는데 관심을 두었다(Burchell, 2002).

5)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성의 개념은 유럽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Isin, 2002; McEwan, 2005; Ho, 2008; Isin, 2012). 유럽의 권력이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식민화함에 따라, 유럽의 국가적 시민성 모델은 우세한 시민성 모델로서 다른 장소에 이식되었다. 서구의 국가적 시민성 모델은 다른 국가들의 기존의 시민성 유형을 무시하거나 탄압했다.

6) 이와 같은 Marshall의 관점은 영국이라는 국가적 상황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민성이 더 이상 국민국가의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에 의해 그의 관점은 도전받게 된다. 최근의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모델은 국가적 시민성보다 개인 및 로컬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7)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매우 드문 경우에만 고려한다. 한 개인이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국가를 횡단하여 여행할 때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만약 개인의 권리가 위협받거나 갈취당한다면, 사람들은 행동하거나 저항할 의무를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국가의 시민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그리고 시민권 가입이 부정된 사람들) 또는 부분적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 노동은 할 수는 있지만 의료 혜택은 주장할 수 없는)은 한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훨씬 더 성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종, 성별, 연령 또는 젠더에 근거하여 장소로부터 배제되거나 배제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인지 스스로 자문할 수도 있다.

8)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공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국가는 인류 역사상 최근에 와서야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근대 국가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문화 공동체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그들은 그들의 마을, 교구, 도시 등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

했던 것이다(Anderson, 1991).

- 9) 일명 유니언 잭(Union Jack)이라고도 하는 영국의 국기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북아일랜드를 통합하는 상징적 의미를, 미국의 성조기(Stars and Stipes)는 미국 각 주들의 통합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 10) 정치적 측면의 시민성은 투표권과 정치적 참정권 등의 권리와 외부 국가로부터의 국가의 시민권 부여, 납세 또는 국방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시민성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의 실천을 통한 개인 사생활과 재산 보호권과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시민사회 참여권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료 및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이행의 의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1) 다민족 국가에서 사람들을 하나의 국적으로 묶는 것은 어렵다. 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ies)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주어진 민족 정체성도 세계화 시대에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서 자아 정체성의 기초가 되었던 민족 정체성은 더 이상 단일한 형태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이고 성찰적으로 구성되기를 원하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경이 불분명해지고 초국적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민족 정체성은 혼성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 12)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은 시민성이 수동적으로 수용되기보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가 권리보다 강조되며, 사람들은 로컬 정부 주도의 자발적 활동에 참여한다. ‘공적(public)’ 시민 그리고 ‘공동체주의(communitarian)’ 시민이라고도 한다(Yarwood, 2014).
- 13) 생태시민(biocitizenship)은 인간과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공생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들은 종종 생물보안(biosecurity)에 관한 논쟁에서 유발되는 시민성이다(Yarwood, 2014).
- 14) 제도, 예를 들면 공동체와 자발적 조직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성원을 홀륭하고 유용한 시민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교육은 형식적 교수와 부가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관, 공간의 물리적 질서 역시 시민성의 발달과 표현에 중요하다. 이는 특히 공적 공간에서 그러하다. 공원 등에서 발견되는 기념비 또는 조각상은 시민들이 국가의 집합적 기억에서 중요한 사건, 사람 또는 기억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각종 퍼레이드 및 세러머니는 그것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연속한 수행을 통해 이러한 이상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기억의 경관들은 종종 패권적인 국가와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패권적인 경관은 저항의 장소로서 사용되기도 한다(Cresswell, 1996; Anderson, 2009). 예를 들면, 패권적인 서울시청의 경관이 이에 저항하는 많은 운동의 실천적 장소로 사용된다. 몸 역시

시민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몸 그 자체는 과정, 관계,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시민성의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다(Gabrielson and Parady, 2010). 예를 들면, 몸은 인신매매자에 의해 팔릴 수 있고, 당국에 의해 투옥되거나 추방될 수 있으며, 상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이한 행위자들에 의해 재현될 수도 있다.

문헌

- 남호엽, 2001, 한국 사회과학에서의 민족 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배균, 2013, 국가-지역 연구의 인식론: 사회공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박배균·김동환,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국가와 지역, *알트*, 22-51.
- 이경한, 2007,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3), 205-213.
- Amnesty International, 2012,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Amnesty International.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Verso, London.
- Anderson, J., 2009,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Rpotledge(존 앤더슨 지음, 이영민·이종희 옮김, 2013, 문화, 장소, 흔적, 한울).
- Anderson, J., Askins, K., Cook, I., Desforges, L., Evans, J., Fannin, M., Fuller, D., Griffiths, H., Lambert, D., Lee, R., MacLeavy, J., Mayblin, L., Morgan, J., Payne, B., Pykett, J., Roberts, D. and Skelton, T., 2008, What is geography's contribution to making citizens?, *Geography*, 93(1), 34-39.
- Anderson, K., 1999, Introduction, in Anderson, K. and Gale, F. (eds.), *Cultural Geographies*, 2nd edn, Melbourne, Longman, 1-17.
- Banks, J.A and Banks, C.A.M. (eds.), 2001,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San Francisco.
- Banks, J.A., 199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eachers College Press.
- Banks, J.A., 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The Educational Researcher*, 37(3), 129-305.
- Barker, K., 2010, Biosecure citizenship: politicising symbiotic associ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biological threat,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 350-363.
- Bellamy, R., 2008, *A very Short Introduction to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urchell, D., 2002, Ancient citizenship and its inheritors, in I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89-104.
- Chouinard, V., 2009, Citizenship, Kitchen, R. and Thrift, N.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Esvier, 107-112.
- Closs Stephens, A. and Squire, V., 2012a, Citizenship without commu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434-436.
- Closs Stephens, A. and Squire, V., 2012b, Politics through a web: citizenship and community unbounde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551-567.
- Cresswell, T., 1996, *In Place/Out of Place: Geography, Ideology and Transgress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sota.
- Cresswell, T., 2009, The prosthetic citizen: new geographies of citizenship,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20, 259-273.
- Desforges, L., Jones, R. and Woods, M., 2005, New geographies of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9, 439-451.
-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Driver, F. and Maddrell, A., 1996, Geographical education and citizenship: introductio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2, 371-372.
- Elden, S., 2010, Land, terrain, territor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 799-817.
- Escobar, C., 2006, Migration and citizen rights: the Mexican case, *Citizenship Studies*, 10, 503

-522.

- Faulks, K., 2000, *Citizenship*, Routledge, London.
- Gabrielson, T. and Parady, K., 2010, Corporal citizenship: rethinking green citizenship through the body, *Environmental Politics*, 19, 374-391.
- Gutmann, A., 2004, Unity and diversity in democratic multicultural education: Creative and destructive tensions, in Banks, J.A. (ed.),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 Jossey-Bass, San Francisco, 71-96.
- Ho, E., 2008, Citizenship,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a review and critical interventions, *Geography Compass*, 2, 1286-300.
- Hopkins, N. and Blackwood, L., 2011, Everyday Citizenship: Identity and Recogni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215-227.
- Insin, E. and Turner, B. (eds.), 2002,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 Insin, E. and Turner, B., 2007, Investigating citizenship: an agenda for citizenship studies, *Citizenship Studies*, 11, 5-17.
- Insin, E., 2002, Citizenship after orientalism, in In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117-128.
- Insin, E., 2012, Citizenship after orientalism: an unfinished project, *Citizenship Studies*, 16, 563-572.
- Jackson, P., 2002, *Geographies of difference and diversity*, *Geography*, 87(4), 316-323.
- Jackson, P., 2010, Citizenship and the geographies of everyday life, *Geography*, 95, 139-140.
- Janoski, T. and Gran, B., 2002, Political citizenship: foundations of rights, in In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13-52.
- Jones, M., Jones, R. and Woods, M., 2004,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옮김,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 Kymlicka, W., 2001,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장동진·장휘·우정열·백성욱 옮김, 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Lambert, D. and Machon, P., 2001, *Citizenship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Falmer, London and New York.
- Lepofsky, J. and Fraser, J. C., 2003, Building community citizens: claiming the right to place-making in the city, *Urban Studies*, 40, 127-142.
- Lewis, G. (ed.), 2004, *Citizenship: Personal Lives and Social Policy*,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 Marshall, T. H., 1950(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Marshall, T. and Bottomore, T. (ed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London, 3-54.
- Marshall, T. H.,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London.
- McDowell, L. and Sharp, J. (eds.), 1997, *Space, Gender, Knowledge, Feminist readings*, Arnold, London.
- McEwan, C., 2005, New spaces of citizenship? Rethinking gendered participation an empowerment in South Africa, *Political Geography*, 24, 969-991.
- Miller, D., 1997, *On Nationality*, Clarendon Press, Oxford.
- Miller, T., 2002, Cultural Citizenship, in In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231-243.
- Mills, S., 2013, "An instruction in good citizenship": Scouting and historical geographies of citizenship educ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8, 120-134.
- Mitchell, K., 2009, Citizenship, in Gregory, K., Johnston, R., Pratt, G., Watts, M. and Whatmore, S.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fifth edition, Wiley Blackwell, Oxford, 84-85.
- Mullard, M., 2004, *The Politics of Globalisation*

- and *Polarisation*, Edward Elgar, Cheltenham.
- Painter, J. and Philo, C., 1995, Spaces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14(2), 107–120.
- Painter, J., 2002, Multilevel citizenship, identity and regions in contemporary Europe, in Anderson, J. (ed.), *Transnational Democracy: Political Spaces and Border Crossing*, Routledge, London, 93–110.
- Painter, J., 2007, What kind of citizenship for what kind of community?, *Political Geography*, 26, 221–224.
- Penrose, J., 1993, *Constructions of Race, Place, and N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hilo, C., 1993, Spaces of citizenship, *Area*, 25 (2), 194–196.
- Pykett, J., 2009, Making citizens in the classroom: an urban geography of citizenship education?, *Urban Studies*, 46, 803–823.
- Pykett, J., 2010, Designing identity: exploring citizenship through geographies of identity, *Geography*, 95, 132–134.
- Pykett, J., 2011, Citizenship education and narratives of pedagogy, *Citizenship Studies*, 14, 621–635.
- Pykett, J., Cloke, P., Barnett, C., Clarke, N. and Malpass, A., 2010, Learning to be global citizens: the rationalities of fair-trade edu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487–508.
- Rasmussen, C. and Brown, M., 2005, The body politics as spatial metaphor, *Citizenship Studies*, 9, 469–484.
- Rosaldo, R., 1997,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Flores, W.V. and Benmayor, R. (eds.), *Latino cultural citizenship: Claiming identity, space, and rights*, Beacon, Boston, 27–28.
- Sassen, S., 2002, Towards a post-national and denationalised citizenship, in Isin, F. E. and Turner, B. S.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age, London.
- Smith, S. J., 1989, Society, space and citizenship: a human geography for the “new tim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4(2), 144–156.
- Smith, S., 2000, Citizenship, in Johnston, R., Gregory, K., Pratt, G. and Watts, M.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 ed.), Blackwell, Oxford, 83–84.
- Staheli, L., 2008, Citizenship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Political Geography*, 27, 5–21.
- Staheli, L., 2010, Political geography: where’s citizenship,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 393–400.
- Stevenson, N., (ed.), 2001, *Culture and Citizenship*, Sage, London.
- Storey, D., 2003, *Citizen, state and nation*, Geographical Association, Sheffield.
- Storey, D., 2011, *Territories: the Claiming of Space*, Prentice-Hall, Harlow.
- Turner, B., 1997,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1, 5–18.
- Turner, B., 2001, Outline of a general theory of cultural citizenship, in Stevenson, N. (ed.), *Culture and Citizenship*, Sage, London, 259–276.
- Urry, J.,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Routledge, London.
- Yarwood, R., 2014, *Citizenship: Key Ideas in Geography*, Oxon, Routledge.
- 교신 :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ckcho@knu.ac.kr, 전화: 053-950-5857)
- Correspondence :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ckcho@knu.ac.kr, phone: +82-53-950-5857)
- (접수: 2016.04.04, 수정: 2016.08.01, 채택: 2016.08.25)